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41
----------	-----

제출일자 : 2008. 8. 21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지침으로 실시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쓰레
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2008.5.14)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자 하며,
- 대형폐기물배출자가 재이용 등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수수료
의 환부를 요구하는 경우 환부해 주도록 하는 환부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삭제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5조의2)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규정 신설(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08. 6. 23. ~ 2008. 7. 14.(특이사항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를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5]”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4 제3항 중 “제63조”를 “제6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흰색”을 “흰색, 옅은 녹색”으로 하고, 제3항의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제6조의2”를 “제8조의2”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적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필름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 등을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연탄재”를 “가정생활쓰레기 중 연탄재”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는 [별표6]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시 처리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③대형폐기물 수거를 대행할 경우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쓰레기봉투의 매수”를 “환불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 또는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3”으로 한다.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주민부담율}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
2. 주민부담율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비율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적용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ℓ)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5	112	8	120
10	204	16	220
20	398	32	430
30	591	49	640
50	969	81	1,050
100	1,917	163	2,080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호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	업 체 명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자택	
	주민등록주소			사무실	
	운반차량번호		폐기물의종류 및 수량		
	처리장소	☐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업 체 명		성 명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 서 기재)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g)	사용료납부 금액(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제 호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	업 체 명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자택	
	운반차량번호			사무실	
	처리장소	☐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	폐기물의종류 및 수량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업 체 명		성 명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자택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 서 기재)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g)	사용료납부 금액(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4조 제1항----- -----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5]-----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68조----- ----- ----- ----- -----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①.~②.(생략) ②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68조----- ----- -----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생략)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되,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u>흰색</u>, 공공용봉투는 <u>엷은 청색</u>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u>[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u>에 따른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생략)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u>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u>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u>제13조제2항</u>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u>제6조의2</u>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u>[별지 제7호 서식]</u>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14조의2(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u>[별표4]</u>와 같다.	②----- ----- -----<u>흰색</u>, <u>엷은 녹색</u>-----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u>[단체표준규격]</u>에 따른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u>단체표준규격</u>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u>제14조제2항</u>----- ----- -----<u>제8조의2</u>----- ----- ----- ②.~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적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필름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3(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 등을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3.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3. 가정생활쓰레기 중 연탄재----- ----- 4.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는 [별표6]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생략) (신설) (신설)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시 처리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③대형폐기물 수거를 대행할 경우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군수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환불규정) ①----- ----- ----- ----- ②군수 또는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환불 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읍면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제23조(업무의 위임)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3 ----- -----

현행	개정안																					
【별표4】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의2 관련)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행위</th><th>과태료</th><th>포상금</th></tr> </thead> <tbody> <tr> <td>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버리는 행위</td><td>3</td><td>과태료의10% (1인 월50천 이내 지급)</td></tr> <tr> <td>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td><td>5</td><td>과태료의10% (1인 월50천 이내 지급)</td></tr> <tr> <td>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td><td>5</td><td>과태료의10% (1인월50천 이내지급)</td></tr> <tr> <td>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td><td>20</td><td>10</td></tr> <tr> <td>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td><td>50</td><td>25</td></tr> <tr> <td>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td><td>100</td><td>50</td></tr> </tbody> </table>	행위	과태료	포상금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버리는 행위	3	과태료의10% (1인 월50천 이내 지급)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과태료의10% (1인 월50천 이내 지급)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5	과태료의10% (1인월50천 이내지급)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	10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2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50	【별표4】 삭제
행위	과태료	포상금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버리는 행위	3	과태료의10% (1인 월50천 이내 지급)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과태료의10% (1인 월50천 이내 지급)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5	과태료의10% (1인월50천 이내지급)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	10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2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50																				
【별표 5】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table border="1"> <tr> <td>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td></tr> </table>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둘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 2. 수수료자립도는 기존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의거 매년 10%씩 상향 조증 (95. 40% → 97. 60% → 2001. 100%)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 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봉투 용량별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별표 5】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table border="1"> <tr> <td>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td></tr> </table>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 2. 주민부담율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비율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현행							개정안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ℓ)	5	10	20	30	50	100	용량별(ℓ)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판매가격(원)	120	220	430	640	1,050	2,080	5	112	8	120
							10	204	16	220
							20	398	32	430
							30	591	49	640
							50	969	81	1,050
							100	1,917	163	2,080